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6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이광희 · 최혁진 · 조계원
박해철 · 김문수 · 이재강
민병덕 · 채현일 · 윤건영
문금주 · 김우영 · 박지원
임미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운반·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	2.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u>토지</u> , <u>물류단지시설용 토</u> <u>지</u> 등 공지상태(空地狀態)	나. ----- ----- <u>토지</u> ----- ----- ----- ----- -----
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 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 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3. ----- -----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 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사. (생 략) <u><신 설></u> <u>아.</u> (생 략) ② · ③ (생 략)	-----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 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u> <u>자.</u> (현행 아목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